사회봉사학점운영규정

제정 2008. 3.

개정 2010. 6.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2조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사회봉사학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교과운영)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"사회봉사(교양선택)"로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수강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"사회봉사"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2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.
- **제3조 (사회봉사학점 신청자격)** ① 우송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해당학기에는 수강 신청할 수 없다.
 - ② "사회봉사"를 이수하는 중 2회 이상 Fail된 학생은 "사회봉사"의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
- 제4조 (사회봉사활동의 인정범위)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내/외국인 학생의 현지 문화 적응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(Mentoring Program)에 멘토(Mentor)로 활동한 경우
 - 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·군·구에서 공식인가 된 기관에서 활동한 경우
 - 3. 학교 홍보를 위해 고교방문단으로 활동한 경우
 - 4. 기타 사회봉사단에서 교과목으로의 운영이 인정되는 경우
- 제5조 (활동기간 및 시간) ① 봉사활동 기간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
 - ②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활동기간으로 인정한다.
 - ③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/외국인 멘토는 주2~3회 5시간이상, 10주 이상(총 50시간 이상)의 활동을 해야 한다. 다만, 기타 다른 봉사활동을 할 경우 이수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6조 (사회봉사학점 이수절차) ① 사회봉사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사회봉사 과목(교양선택)을 수강 신청하고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, 효율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신청자는 예비교육을 받아야한다. 예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.
 - ③ 사회봉사활동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 보고서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 (사회봉사학점 이수의 관리 및 확인) ① 소관부서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학생을 관리 및 확인한다.
 - ② 학생복지처 또는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·군·구에서 공식인가 된 기관에서 활동한 학생을 관리 및 확인한다.
 - ③ 입학처 및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고교방문단으로 활동하는 학생을 관리 및 확인한다.
- 제8조 (사회봉사학점의 인정범위) ① 사회봉사학점으로 1학기와 여름학기 및 2학기와 겨울학기 각 1학점 까지, 재학 중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고교방문단으로 활동한 경우 1학점만 인정한다.
 - ② 전담교수는 기본소양교육, 학생의 활동(실습)보고서, 활동 기관단체에서 확인된 출석부를 종합·평가한 후 성적입력을 처리하며, 성적은 Pass/Fail로 하고,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.
 - ③ 휴학 중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 다만, 재학 중 방학기간에 사회봉사활동을

한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사회봉사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④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필요시 사회봉사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.

제9조 (기타사항) 사회봉사학점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